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349

제출년월일 : 1994. 6.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제14, 262호 ('94. 5. 16.)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복무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제2항).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안 제21조).
-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안 제24조).
-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백숙부모 사망시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각각 추가함 (안 별표 2).

□ 개정근거

-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4,262호)

□ 조례안 : 불임

□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 불임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불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본문중 '연 2월'을 '연 60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연 6월'을 '연 180일'로 한다.

제21조본문중 '필요한 기간 공가'를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로 하고, 동조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기간의 전보명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2조제6항중 '법 제46조 2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을 '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한다.

제24조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1
출 산	배우자 (처)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7 5 3 3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1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